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 - 248호

공시 송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130조, 동법시행령[2012.6.29. 대통령령 제23924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1호, 제137조의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자에게 동법 제449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부과통지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일 금융위워회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납부기한
㈜쎄라텍	123-81-21520	경기도 군포시 홍안대로 28(금정동)	10만원	′15.11.2

- 2. 서류의 명칭 : 과태료 부과 결정통보
- 3. 서류의 내용: (1)우리 위원회는 귀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조치하니 이를 이행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위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법규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시본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다만, 위원회가 귀사의 이의 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귀사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해당 이의 제기를 통보하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과태료 재판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3)위반사실 확인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56-3314)로, 납부고지서 발급 문의는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02-2156-957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쎄라텍에 대한 조치(2015.9.9.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1부. 끝.

㈜ 씨라텍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쎄라텍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130조, 동법시행령[2012.6.29. 대통령령 제23924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1호, 제137조의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의 사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1항 제36호에 의하여 과태료 100,000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쎄라텍 [비상장법인]
 - 대표이사 : 송 우 섭
 - 사업자등록번호 : 123-81-21520
 - 본점소재지 : 경기도 군포시 흥안대로 28(금정동)

□ 조치이유

-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
 - 증권을 모집하는 발행인은 당해 모집가액과 당해 모집일로부터 과거 1년간(같은 기간 동안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한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신고 후의 기간을 말한다)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모집가액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쎄라텍은 2011. 12. 26. ~ 2012. 6. 11. 기간 동안 총 7회의 유 상증자를 통해 14.8억원*을 모집함에 있어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 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 ① 2011. 12. 26. 5.5억원, ② 2012. 3. 19. 1.6억원, ③ 2012. 3. 26. 2.7억원,
 - ④ 2012. 4. 2. 1.5억원, ⑤ 2012. 4. 5. 1.5억원, ⑥ 2012. 4. 12. 1.0억원,
 - ⑦ 2012. 6.11.1.0억원